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1911) 상품요약서

<개요 및 구조>

-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 1911)은 가족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신체손해, 배상책임 손해 및 주택과 관련된 재물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보장보험입니다.

• 상품구조

구 분	내 용
상품 형태	보장적립구분형
보장부분 적용이율	2.5%
적립부분 적용이율	보장성 공시이율 V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본계약)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만15세~ Min[90, (100-보험기간)]세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본계약)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만15세~ Min[90, (100-보험기간)]세
상해사망(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20%이상),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수술입원일당(1-60일),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 골절수술, 골절진단, 화상수술, 가족화재벌금,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상해수술, 가족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1개월초과), 강력범죄피해, 과실치사상벌금(가족), 골프용품손해, 휴일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일상생활중배상책임 II (가족), 일상생활중배상책임 II (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 김치치료, 폭력피해(사망제외), 응급실내원진료비, 음주·행소니(피해자)교통상해사망, 음주·행소니(피해자)교통상해부상(1-10급), 상해후유장해(20%이상, 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중대한특정상해수술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만15세~ Min[90, (100-보험기간)]세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 자동차사고별금(대인), 자동차사고별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만18세~ Min[80, (90-보험기간)]세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보이스피싱손해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20세~90세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별금,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소송)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만19세~ Min[90, (100-보험기간)]세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만18세~ 80세
화재손해(주택),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 도난손해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항공기차량손해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임대인 임대료손실, 주택 임시거주비(1~90일)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전기손해	5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
	10년만기	5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일시납	

※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Ⅱ 보장 특약 및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가족, 주택내화재배상제외)보장 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화재배상책임과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가족)은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임대인배상책임보장 특약 및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보장 특약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화재손해(주택), 붕괴·침강·사태손해(주택), 도난손해,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항공기차량손해, 화재배상책임보장 특약은 주택물건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물복구비용지원(주택, 화재), 임대인 임대료손실보장 특약 및 주택 임시거주비(1~90일)보장 특약은 화재손해(주택)보장 특약 부가시 가입가능합니다.
- ※ 보험목적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주택 임시거주비(1~90일),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및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자동차사고별금(대인), 자동차사고별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장 특약은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보장 특약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보장 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보장 및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소송)보장 특약은 동시에 부가할 수 없습니다.
- ※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보장 특약은 주택 물건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목적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임대인 임대료손실 보장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보장 특약은 자가용운전자 및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은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또는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과 동시에 부가할 수 없습니다.
-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및 신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합니다.
-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 보장특약 가입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장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V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의 “가. 가입자격제한”의 내용과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만기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지급

■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단위복리로 계산합니다.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금

회사는 계약일부터 6개월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 2인 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

- 적용대상 : 피보험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2인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한 계약
- 대상계약 : 기본계약 및 이 상품에 부가된 보장 특약
- 할인금액 : 영업보험료에 아래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함

피보험자수	2인	3인 이상
할인율	1.0%	2.0%

○ 재물 소재지 2개 이상 가입에 따른 할인

- 적용대상 : 재물손해관련 보장 특약에 소재지 2개 이상 가입한 계약
- 대상계약 : 재물 소재지에 부가된 보장 특약

대상 계약
화재손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전기손해, 도난손해,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주택임시거주비(1~90일), 임대인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항공기·차량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주택),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주택), 건물복구비용(주택, 화재),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임대료손실

- 할인금액 : 영업보험료에 아래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함

소재지 수	2건	3건 이상
할인율	1.0%	2.0%

○ 상가 할인율은 중복적용 가능함(최대 할인율 3%)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 약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 해 관 련 보 장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후유장해 (20%이상)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후유장해 (80%이상, 월지급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	<table><tr><th>지급금액</th></tr><tr><td>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회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td></tr><tr><th>1회 지급액</th></tr><tr><td>해당 특약 월지급액</td></tr></table>	지급금액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회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액
	지급금액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회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액						
	상해후유장해 (50%이상, 월지급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된 경우					
	상해사망 (월지급형)	상해로 사망시					
	음주·뺑소니(피해자) 교통상해사망	음주·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동승 중 사고 제외)	특약가입금액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진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진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수술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 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 해 관 련 보 장	화상수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후유장해 (20%이상, 월지급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table><tr><th>지급금액</th></tr><tr><td>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회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td></tr><tr><th>1회 지급액</th></tr><tr><td>해당 특약 월지급금액 × 후유장해지급률</td></tr></table>	지급금액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회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금액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1회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입원일당 (1~180일)	상해로 1日以上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상해로 1日以上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음주·뺑소니 (피해자) 교통상해부상 (1~10급)	‘음주·뺑소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1~10급의 상해등급을 진단 받은 경우(동승 중 사고 제외)	특약가입금액				
	상해수술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상해수술입원 일당(1~60일)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상해수술입원 일당(1~10일)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0일한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 해 질 병 관 련 보 장	김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김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	치료 1회당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비 용 손 해 관 련 보 장	자동차 사고별금(대인)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 사고별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면허정지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한도)																		
	자동차사고 면허취소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특약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table><tr><th>상해급수</th><th>지급금액</th></tr><tr><td>1급</td><td>1,000만원</td></tr><tr><td>2급</td><td>500만원</td></tr><tr><td>3~4급</td><td>300만원</td></tr><tr><td>5급</td><td>150만원</td></tr><tr><td>6급</td><td>80만원</td></tr><tr><td>7급</td><td>40만원</td></tr><tr><td>8~11급</td><td>20만원</td></tr><tr><td>12~14급</td><td>10만원</td></tr></table>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 (비운전중)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 용 손 해 관 련 보 장	과실치사상별금 (가족)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5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7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별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가족강력범죄 피해 (사망제외, 1개월초과)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폭력피해 (사망제외)	폭력피해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가족화재별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해당액으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단, 1심에 한함)
	출원원비용	골프경기 중 출원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최초 1회한)
	알바트로스비용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최초 1회한)
	보이스피싱손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용 손해 관련 보장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IV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보험 가입 금액	형사합의금				
				사망 /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 (6주) 이상~ 70일 (10주) 미만	70일 (10주) 이상~ 140일 (20주) 미만	140일 (20주) 이상	
					3천만원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5천만원	5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7천만원	7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4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1억원	1억원 한도	1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가족동승자 자동차 사고부상 (자가용)(1~14급)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상해급수		지급금액				
		1~3급		50만원				
		4~6급		40만원				
		7~9급		30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상해등급 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용 손해 관련 보장	법률비용손해 (민사소송)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 (부동산소유권소송)	피보험자가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1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용 손 해 관 련 보 장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6대 가전제 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 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타이어파손교체 비용(수리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가용자동차를 국내에서 운행 하던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 하여 타이어가 손상되어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타이어교체비용(연간1회)
재 물 손 해 관 련 보 장	화재손해 (주택)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 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 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 용의 합계액은 특약가입금액 한 도
	붕괴·침강· 사태손해(주택)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 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주택)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의 낙하물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 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주택)	풍수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항공기· 차량손해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 인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 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도난 손해	일반 가재 명기 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 물 손 해 관 련 보 장	건물복구비용지 원(주택, 화재)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가입한 건 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 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 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임대인 임대료손실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 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 한 경우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90일 한도)
	주택 임시거주비 (1-90일)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 로써 1일이상 보험목적 내에 거주 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당 10만원 한도 (90일 한도)
	전기손해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 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급배수설비 누출로인한손해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 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 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 었을 경우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 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는 보상에서 제외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배 상 책 임 관 련 보 장	화재배상책임	[대인]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대물] : 특약가입금액 한도
	임대인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제외)
	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가족)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 (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일상생활중 배상책임II (가족, 주택내화재 배상제외)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폭발사고 제외)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용어 해설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이 상품의 벌금관련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Ⅳ, 법률비용관련보장, 재물손해관련보장 및 배상책임관련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다수계약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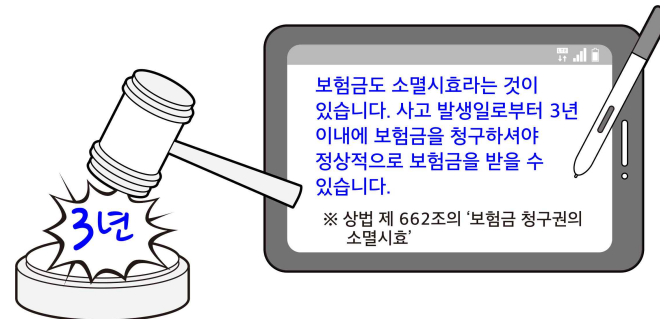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Q> 바빠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데, 아무 때나 청구하면 되나요?



-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효력회복)계약 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지급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면책	-	X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면책	-	X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0일 면책	-	X
타이어파손교체비용 (수리제외)	30일 면책	-	X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나.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
연단위 복리 2.5%	보장성 공시이율 V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 V)란?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 V)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 (무)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 1911)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 공시이율 V가 변동될 경우 (무)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 1911)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 191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다.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기준: 남, 여 40세)

구분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화재상해사망률	0.000006	
화재상해후유장해지급률(3~100%)	0.0000034	
가족화재발금	67.582847	

라.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용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24.0%	149.4%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 1911)는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월납 20,000원, 20년만기 20년납
- 기본계약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상해사망(월지급형) 10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단위 : 원, %)

구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40,000	0	0.0%	0	0.0%	0	0.0%
3년	720,000	278,349	38.7%	287,097	39.9%	620,067	39.9%
5년	1,200,000	595,657	49.6%	620,067	51.7%	620,067	51.7%
10년	2,400,000	1,434,511	59.8%	1,537,366	64.1%	1,537,366	64.1%
15년	3,600,000	2,263,153	62.9%	2,513,665	69.8%	2,513,665	69.8%
20년	4,800,000	3,102,730	64.6%	3,579,543	74.6%	3,579,543	74.6%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①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9.11월 현재 1.95%),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9.11월 현재 2.5%,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2019.11월 현재 1.95%)을 한도로 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 V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③ 가입후 10년미만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④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